

장학금 운영 규정

시행 2015. 1. 1, 개정 2015. 10. 4, 개정 2019. 2. 17 개정 2026. 3. 15

제1조(목적)

본 장학금 운영 규정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초신동교회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1. 본 교회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2. 장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당회가 임명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교역자가 수행하며, 서기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업무)

장학에 관한 업무는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장학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장학금의 구분)

본교회의 장학금은 교회내장학금과 외부기탁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정 자격)

본교회의 장학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단, 외부기탁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의 취지에 따른다.)

1. 본 교회 성도나 그의 자녀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

2. 본 교회 교회학교 또는 청년부 예배 또는 장년 예배 등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자
3.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를 장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생 선정 심의)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지급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다.

1. 제적된 경우
2. 신앙에 위배되는 일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장학금 신청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4. 기타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기타사항)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미비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10월 4일부로 개정한다.
3. 본 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로 개정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1. 장학금 운영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장학금 운영 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장학금 운영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장학금 운영 규정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적용)

1. 본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생활하는 자(시행세칙 3조 1항)
2. 외부 학교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자(시행세칙 3조 2항)

제3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교회내장학금과 외부기탁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교회내장학금이라 함은 장학헌금(목적헌금)과 교회 경상예산에서 편성된 비용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2. 외부기탁장학금이라 함은 외부에서 교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기부금(혹은 기금)을 말한다.

제4조(교회내장학금)

교회내장학금의 수혜 자격과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학기별 본교회 출석 성도 중 교회 예산 내에서 학생을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2. 매학기별 외부학교, 기관의 추천을 받아 1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에 한 가정 당 2명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장학금 지급 최대 수혜 횟수를 1인 2회로 제한한다.
 - 교회 봉사자에 한하여 3회 이상 신청 가능

제5조(외부기탁장학금)

외부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른다.

제6조(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본교회의 장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장학금 운영 규정 제6조(장학생의 선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수혜 대상자의 선정 기준
 - 교회 주일 성수는 기본
 - 교회 봉사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줌
3. 수혜 대상자의 성적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급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회 봉사 여부, 주일 성수, 과거 장학금 비수혜자로 하며, 가정 형편을 고려한다.

제7조(장학생 선정 일정)

1. 장학생의 모집은 매년 1월, 7월 교회 주보를 통해 공고 후 1개월간 추천을 받는다.
2.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원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절차)

장학금 지급은 선정 시 학부모 계좌로 이체 지급한다(부득이한 경우 본인 계좌)

제9조(수혜 유효기간)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혜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수혜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에 한한다.

제10조(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제출 서류)

제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한 자에 한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1.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2. 소속 구역장 또는 봉사 부서장 또는 교역자의 추천서 (소정 양식)
3.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고백서

부칙

1.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2015년 10월 4일부로 개정한다.
3. 본 세칙은 2019년 2월 17일부로 개정한다.
4. 본 세칙은 2026년 3월 15일부로 개정한다.